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유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 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리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8 년 07 월 02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 년 07 월 09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 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02-2168-7900, http://www.yurieasset.co.kr)
   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8.07.02)

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펀드 코드: AM167)

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80% 이상 투자하여 수익 추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유리자산운용㈜ [☎ 02-2168-79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18년 07월 09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종류(Class)		A1	A-e	C1	C-e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 전용	제한없음	온라인 전용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보수 (연 %)	판매	0.50	0.25	0.90	0.45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보수: 0.60, 신탁업자보수: 0.02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			
	기타	0.016	0.019	0.016	0.018
	총보수·비용	1.156	0.909	1.556	1.108
	합성총보수·비용	1.166	0.917	1.567	1.118
※ 주석사항		주1)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C-F, 종류C-W, 종류C-P1, 종류S, 종류C-G 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기간 : 2016.11.15~2017.11.14] 주3)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주6)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5시 30분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5시 30분 이전 : 3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롱숏전략, 공모주/이벤트 활용전략, 주식시장 이례현상 활용전략, 채권투자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지수를 발견하거나 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유리트리플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합니다.

<유리트리플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며, 롱숏전략, 공모주 및 이벤트 활용전략, 주식시장 이례현상 활용전략, 채권투자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입니다.

○ **롱숏(Long/Short) 및 차익거래 전략**

·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우선주/보통주, 섹터간, 섹터내, 스타일별 등의 시장중립형 롱숏전략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현·선물 지수차익거래, ETF차익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합니다.

: 고(저)평가된 선물 매도(매수) & 저(고)평가된 현물 매수(매도)

○ **공모주 및 이벤트 활용 전략**

· 공모기업의 펀더멘털, 기업가치, 수급상황 등을 분석을 통해 등록 이후 자본이익 확대 가능성이 높은 공모주를 적극 발굴 및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벤트 투자 전략

: 블록딜(Block Deal), 인수/합병/분사, 공개매수, KOSPI200 / MSCI 등의 정기/비정기 종목교체 등의 이벤트를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주식시장 이례현상 활용 전략**

· 주식시장 월말효과, 시장 과잉반응 등 주식시장의 이례현상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월말효과란, 월말 마지막 며칠 동안과 월초 처음 며칠 동안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 **채권 투자 전략**

· 채권 듀레이션 6개월 ~ 1년 수준으로 금리상승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추구합니다.

· 유동성이 풍부한 통안채, 국고채, 은행채 등에 주로 투자하며, 금리 곡선에 따른 교체매매 및 적절한 투자 대상 선정을 통해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 국채선물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을 일부 활용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 상기에 제시된 운용목표 및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유리 트리플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유리 트리플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

4. 운용전문인력

[2018.07.02 기준, 단위: 개, 억]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수탁고)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주호	1969	퀀트운용본부장	38	4,467	- 한양대 경영학과 - '95.01~'99.08 한진증권 - '99.08~현재. 유리자산운용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해당사항 없음					
책임운용전문인력	윤준수	1967	채권운용1본부장	81	30,251	- 고려대 무역학과 - '94~'96.06/'97.10~'9.8 제일투신 - '98~'04. CJ자산운용 - '05~'06. 교보증권 - '06~'09. 피닉스자산운용 - '09.05~현재. 유리자산운용

부책임 운용 전문 인력	최재영	1972	채권 운용2 본부장			-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02.12~'07.06. 하이자산운용 - '07.06~'09.05. 알리안츠자산운용 - '09.05~현재. 유리자산운용

주1)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6/11/15~ 2017/11/14	2015/11/15~ 2016/11/14	2014/11/15~ 2015/11/14	2013/11/15~ 2014/11/14	2012/11/15~ 2013/11/14
Class A1	2.17	0.66	3.52	-	-
비교지수	-	-	-	-	-

주1) 비교지수: 없음

주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종류A1(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항상 급격히 변화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의 시세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투자전략상 위험	이 투자신탁은 롱숏전략, 공모주 및 이벤트 활용전략, 주식시장 이례현상 활용전략, 채권투자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전략 실행 과정에는 투자신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매매시 시장 충격 및 비용 지출, 상/하한가 제한, 거래 정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대량 환매, 빈번한 설정/해지가 있을 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투자전략이 실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소수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하므로,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이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등 특정 투자대상과 다른 투자대상간의 가격 차이의 추세를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바, 이러한 가격 차이의 추세가 예상과 달리 실현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이시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바,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37%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낮은 수준인 5등급 (낮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운용역 개인의 독단의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당사 내부의 운용업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1 가입자에 한함)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이연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M167)								
클래스(종류)	A1	A-e	C1	C-e	C-F	C-W	C-P1	S	C-G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M196	AM197	AM198	AM199	AM200	AM201	B7605	BE670	BP99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 좌

주1)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M167)								
클래스(종류)	A1	A-e	C1	C-e	C-F	C-W	C-P1	S	C-G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M196	AM197	AM198	AM199	AM200	AM201	B7605	BE670	BP99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등록사항
2013.11.15	- 최초설정
2014.01.27	- 자투자신탁으로의 전환
2015.06.11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법개정사항 및 세제 개편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및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
2015.09.14	- C-P1 클래스 신설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추가 등) - 채권평가회사 추가(에프앤자산평가)
2016.06.07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S클래스 추가 - 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투자대상 추가(환매조건부 매수) -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변경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30	-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판매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15시→15시30분)
2017.01.19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3등급 ➔ 5등급)
2017.04.29	- C-G 클래스 신설
2017.12.26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2018.07.09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한진규 → 박주호)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용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유리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대표전화 : 02-2168-790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18.07.02 기준, 단위: 개, 억]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수탁고)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주호	1969	퀀트운용본부장	38	4,467	- 한양대 경영학과 - '95.01~'99.08 한진증권 - '99.08~현재. 유리자산운용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해당사항 없음					
책임운용전문인력	윤준수	1967	채권운용1본부장	81	30,251	- 고려대 무역학과 - '94~'96.06/'97.10~'9.8 제일투신 - '98~'04. CJ자산운용 - '05~'06. 교보증권 - '06~'09. 피닉스자산운용 - '09.05~현재. 유리자산운용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재영	1972	채권운용2본부장			-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02.12~'07.06. 하이자산운용 - '07.06~'09.05. 알리안츠자산운용 - '09.05~현재. 유리자산운용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퀀트운용본부 퀀트운용팀(10개 펀드, 13,133억), 채권운용본부(4개 펀드, 8,071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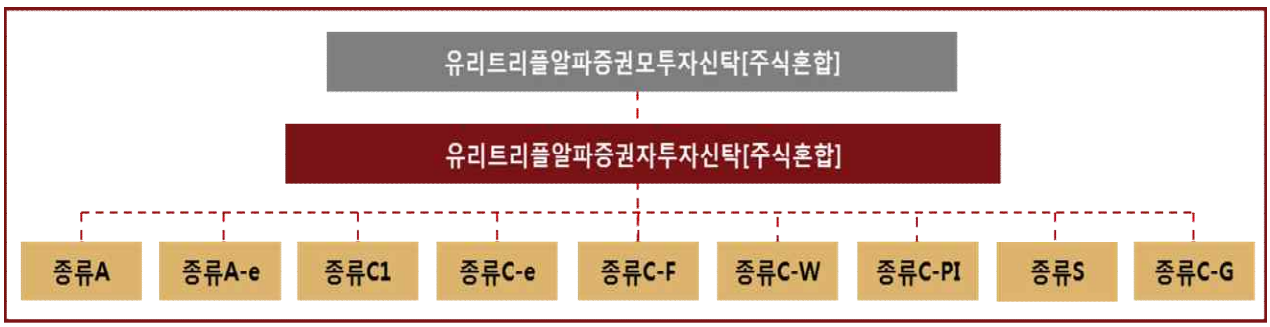
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인력	한진규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2013.11.15) ~ 2018.07.08
	박주호	2018.07.09 ~ 현재
부책임운용인력	박주호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2013.11.15) ~ 2018.07.08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가입자격	설정일
A1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013.12.03
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2013.12.12
C1	가입제한 없음	2013.11.15
C-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2013.12.12
C-F	집합투자기구, 법인 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용 수익증권	2014.06.10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전용 수익증권	2014.07.14
C-P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2016.02.17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2016.08.04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

-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종	수수료	보수 (연간,%)

류	선취 판매	후취 판매	환매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신탁 보수	사무 관리
A1	납입금액의 1.0% 이내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0.6	0.50	0.025	0.015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0.6	0.25	0.025	0.015
C1	-	-		0.6	0.90	0.025	0.015
C-e	-	-		0.6	0.45	0.025	0.015
C-F	-	-		0.6	0.05	0.025	0.015
C-W	-	-		0.6	0.00	0.025	0.015
S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0.6	0.20	0.025	0.015
C-P1	-		-	0.6	0.55	0.025	0.015
C-G	-	-	-	0.6	0.50	0.025	0.015

주1) 이 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당해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유리 트리플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유리트리플알파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
유리트리플알파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유리 트리플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구 분	세부 내용
주요 투자대상	주식 : 90% 이하, 채권 : 50% 미만 등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며, 롱숏전략 및 차익거래 전략, 공모주 및 이벤트 활용전략, 주식시장 이례현상 활용전략, 채권투자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요 투자위험	원금손실위험, 투자전략상 위험, 집중투자위험, 스프레드 위험, 베이시스 위험 등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롱숏전략, 공모주/이벤트 활용전략, 주식시장 이례현상 활용전략, 채권투자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중	세부 내용
유리 트리플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80% 이상	- 주식 : 90% 이하, 채권 : 50% 미만 등 ※ 자세한 투자대상은 아래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10% 이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유리 트리플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투자대상	투자비중	내용
주식	9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합니다)
채권	5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등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및 양도성 예금증서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금리스왑거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 이하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유리 트리플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

	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9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 및 법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롱숏전략, 공모주 및 이벤트 활용전략, 주식시장 이례현상 활용전략, 채권투자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유리 트리플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여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 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유리 트리플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며, 롱숏전략, 공모주 및 이벤트 활용전략, 주식시장 이례현상 활용전략, 채권투자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입니다.

○ 롱숏(Long/Short) 및 차익거래 전략

·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우선주/보통주, 섹터간, 섹터내, 스타일별 등의 시장중립형 롱숏전략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현·선물 지수차익거래, ETF차익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합니다.
: 고(저)평가된 선물 매도(매수) & 저(고)평가된 현물 매수(매도)

○ 공모주 및 이벤트 활용 전략

· 공모기업의 펀더멘털, 기업가치, 수급상황 등을 분석을 통해 등록 이후 자본이익 확대 가능성이 높은 공모주를 적극 발굴 및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벤트 투자 전략
: 블록딜(Block Deal), 인수/합병/분사, 공개매수, KOSPI200 / MSCI 등의 정기/비정기 종목교체 등의 이벤트를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주식시장 이례현상 활용 전략

· 주식시장 월말효과, 시장 과잉반응 등 주식시장의 이례현상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월말효과란, 월말 마지막 며칠 동안과 월초 처음 며칠 동안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 채권 투자 전략

· 채권 듀레이션 6개월 ~ 1년 수준으로 금리상승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를 추구합니다

· 유동성이 풍부한 통안채, 국고채, 은행채 등에 주로 투자하며, 금리 곡선에 따른 교체매매 및 적절한 투자 대상 선정을 통해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 국채선물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을 일부 활용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목적한 바 대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한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상기에 제시된 운용목표의 달성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상기에 제시된 운용목표 및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전략]

- 운용역 개인의 독단의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당사 내부의 운용업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 리스크관리본부에서 각종 법령 및 규정, 지침, 내규가 지켜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으로 펀드의 실적평가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합니다.
- 위험관리를 위하여 투자환경 및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변화가 발생 시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지수를 발견하거나 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유리 트리플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리 트리플 알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은 국내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투자하여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주식, 채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손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으로 이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내용
원금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 및 개별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과 채권 및 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재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부를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시세가 항상 크게 변화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시세 변화에 노출되는데 유의하셔야 합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롤오버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물 또는 옵션 등 파생상품은 현물과 달리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차기 선물 또는 옵션으로 재투자를 해야 하며 재투자 가격이 만기일의 만기상환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롤오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금융투자상품, 예금, 단기대출 등의 자산을 발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거래가 시장에서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손실을 유발합니다.
금리변동위험	금리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항상 변화하는 경제지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무증권 등 이자수입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금리의 하락 시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재투자 수익이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악화 등으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및 운용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거래는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지니며 레버리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내용

투자전략상 위험	이 투자신탁은 롱숏전략, 공모주 및 이벤트 활용전략, 주식시장 이례현상 활용전략, 채권투자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전략 실행 과정에는 투자신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매매시 시장 충격 및 비용 지출, 상/하한가 제한, 거래 정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대량 환매, 빈번한 설정/해지가 있을 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투자전략이 실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소수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하므로,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이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등 특정 투자대상과 다른 투자대상간의 가격 차이의 추세를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바, 이러한 가격 차이의 추세가 예상과 달리 실현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이시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바,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내용
환매가격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 보다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가격의 하락율 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의 연기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보유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심각한 환금성의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투자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지가 발생할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의도한 투자목적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해지 과정에서 투자신탁 재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련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수익자의 지위, 투자신탁재산의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자산으로부터의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이나 예금과 같은 시가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이나 장부가 등을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수익자간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 하에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의무에 다해 의사를 결정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등의 자산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등 거래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 제한,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대량환매위험	일시에 집중적인 대량의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가 방해를 받거나 자산의 처분 자체가 처분가격 및 미처분 자산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용 교란 위험	투자신탁에 대한 설정 및 환매의 청구는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거래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를 방해하거나 자산의 시장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어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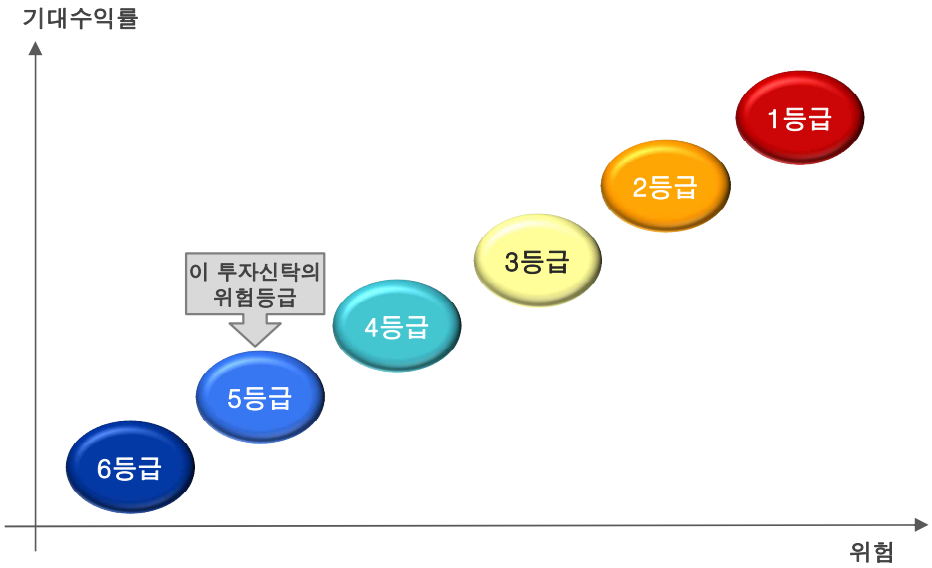
- 유리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유리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같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37%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낮은 수준인 5등급 (낮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2016.07.02	2등급	3등급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위험등급 변경
2017.01.19	3등급	5등급	설정 후 3년 경과,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 변경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이 유발하는 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전체 보유자산 대비 합리적 비중을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거나 특정 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

금을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행위를 절대 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리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 변동성이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종류형은 운용펀드의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말하며 상기 위험등급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의한 판단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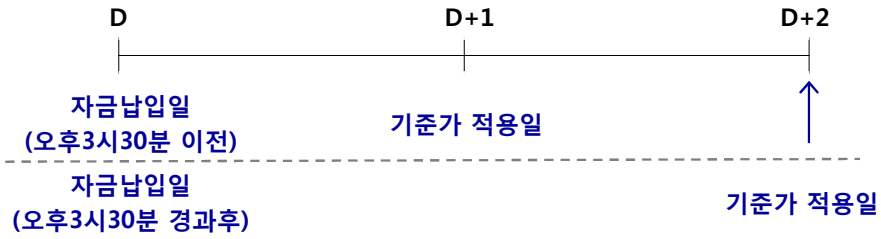
종류	가입자격
A1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C1	가입제한 없음
C-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C-F	집합투자기구, 법인 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용 수익증권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전용 수익증권

C-P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수익증권의 매입 이후에는 일체의 투자성과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하시어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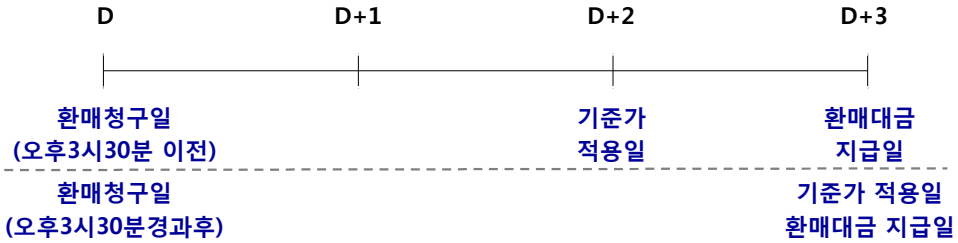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투자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빈번한 환매는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수수료 증가 및 운용에 대한 교란 등을 야기하여 투자성과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문제발생 소지 및 투기적인 단기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 됩니다. 환매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이익을 현저히 하락시키며, 수익증권의 잦은 매매는 높은 환매수수료를 유발합니다.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A1, A-e, C1, C-e, C-F, C-W, S, C-G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환매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C-P1	해당사항 없음	-

주)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7)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일부 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 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일부 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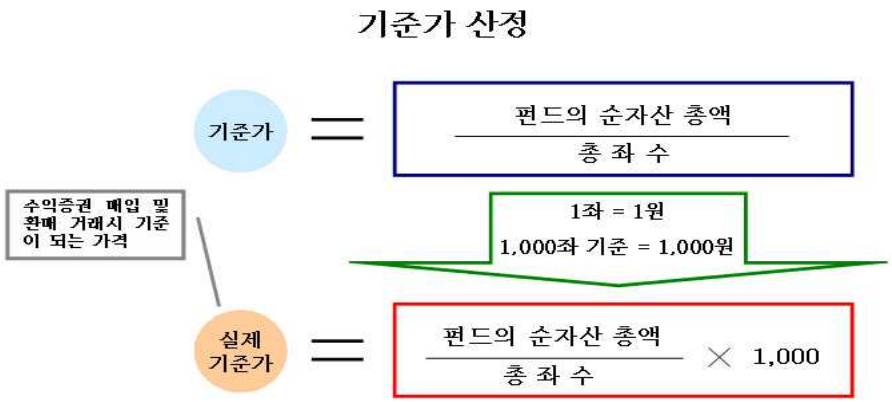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 또는 게시 및 단말기로 조회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판매사 영업점포,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모투자신탁의 경우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투자신탁과 기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모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기타비용등이 자투자신탁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1)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예상배당금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증권사추정 예상배당금과 회사가 추정한 예상배당금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결정
3)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4)시가형성 전 상장신주식	①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형성 전까지의 평가는 구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전환 또는 행사기준일을 영업년도 말로 보는 경우에는 구주식의 평가액에서 배당액을 차감하여 평가 ②공모신주식은 최초로 시가가 형성되는 날까지 취득가액으로 평가 ③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미상장주식은 해지금 지급일에 지급일 전일의 평가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함 ④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신주인수권은 해지금 지급일에 전일의 평가액에서 신주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함
5)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6)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7)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
8)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함)
9)비상장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의 상장채무증권 평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10)외화표시상장주식/상장채무증권	당해 투자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11)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2)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비상장 외화표시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4)매각제한 투자재산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평가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곤란하여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재산 -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재산 - 기준가 산출시점 현재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산으로서 외국의 최종시가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외화표시재산 - 상기 1)~13)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주1) 상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위원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간사 : 평가담당부서장(주무 부서장)
회의소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기능	다음의 사항을 논의 및 결정 -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의결방법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1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
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	-		-
C1	가입제한 없음	-	-		-
C-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	-		-
C-F	집합투자기구, 법인 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용 수익증권	-	-		-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전용 수익증권	-	-		-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환매시 : 이익금의 30%	

	수익증권				
C-P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	-	-	-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	-	- 3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30%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자가 최초 매입하는 Class A1 및 Class A-e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상기의 판매수수료율 이내 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Class S 수익증권에 한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부과되며 상기의 후취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A1	0.60	0.50	0.025	0.015	0.016	1.156	1.166	0.064
A-e	0.60	0.25	0.025	0.015	0.019	0.909	0.917	0.055
C1	0.60	0.90	0.025	0.015	0.016	1.556	1.567	0.064
C-e	0.60	0.45	0.025	0.015	0.018	1.108	1.118	0.061
C-F	0.60	0.05	0.025	0.015	0.015	0.705	0.710	0.064
C-W	0.60	0.00	0.025	0.015	0.015	0.655	0.659	0.066
C-P1	0.60	0.55	0.025	0.015	0.006	1.196	1.204	0.063
S	0.60	0.20	0.025	0.015	0.006	0.846	0.854	0.100
C-G	0.60	0.50	0.025	0.015	0.018	1.158	1.168	0.061
부과기준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기간 : 2016.11.15~2017.11.14]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기간 : 2016.11.15~2017.11.14]

주3) 증권 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4)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은 설정된 클래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를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작성일 현재 설정전으로 모투자신탁의 보수는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7) 투자신탁 관련 비용 :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종류	투자기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A1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16	467	743	1,56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17	470	749	1,578
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4	262	480	1,12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5	264	484	1,138
C1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9	501	877	1,99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0	504	884	2,011
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3	355	622	1,41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4	358	628	1,430
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1	224	393	89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2	226	396	901
C-W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6	208	364	82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6	209	366	834
C-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2	385	676	1,53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3	388	680	1,548
S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1	287	492	1,10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02	290	496	1,110
C-G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8	371	650	1,48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9	374	656	1,49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증권매매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은 비용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종류별로(A1, C1)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 3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변경 등에 따라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Class A1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1.0%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4) Class A-e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5%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5) Class S의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고, 환매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달라서 상기 수수료 및 보수·비용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lass S 수익증권의 투자자가 실제 환매시점에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상기 예시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6월 7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 단계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1 가입자에 한함)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4 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3 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2 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요약대차대조표			
항목	제4기 (2017.11.14)	제3기 (2016.11.14)	제2기 (2015.11.14)
운용자산	44,420,185,697	86,519,578,231	120,380,377,670
유가증권	44,415,490,526	86,079,535,843	119,977,413,722
현금 및 예치금	4,695,171	440,042,388	402,963,948
기타자산	129,991,922	3,787,186,515	52,629,892
자산총계	44,550,177,619	90,306,764,746	120,433,007,562
기타부채	587,855,737	3,836,752,528	5,458,896,806
부채총계	587,855,737	3,836,752,528	5,458,896,806
원본	42,327,724,840	84,933,456,942	114,974,110,756
이익조정금	1,634,597,042	1,536,555,276	0
자본총계	43,962,321,882	86,470,012,218	114,974,110,756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제4기 (2016.11.15~2017.11.14)	제3기 (2015.11.15~2016.11.14)	제2기 (2014.11.15~2015.11.14)
운용수익	1,868,320,894	2,139,465,652	4,406,681,519
이자수익	447,541	1,857,551	6,614,350
배당수익	1,018,277,837	0	0
매매/평가차익(손)	848,908,373	2,133,369,562	4,390,400,209
기타수익	687,143	4,238,539	9,666,960
운용비용	1,100,000	1,100,000	1,438,240
매매수수료	0	0	63,240
기타비용	1,100,000	1,100,000	1,375,000
당기순이익	1,867,220,894	2,138,365,652	4,405,243,279

주1) 요약 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상기의 요약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구분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		환매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투자신탁(전체)	2014/11/15~2015/11/14	54,612	54,612	151,118	153,932	90,756	92,575	114,974	120,378
	2015/11/15~2016/11/14	114,974	114,974	85,616	86,207	115,657	116,846	84,933	86,474
	2016/11/15~2017/11/14	84,933	86,470	24,215	24,881	66,821	68,686	42,328	44,533
A1	2014/11/15~2015/11/14	23,531	23,531	45,088	45,583	34,791	35,230	35,462	36,710
	2015/11/15~2016/11/14	35,462	35,462	17,775	17,844	22,050	22,156	32,434	32,647
	2016/11/15~2017/11/14	32,434	32,647	579	585	22,332	22,576	10,680	10,984
A-e	2014/11/15~2015/11/14	1,191	1,191	2,446	2,479	1,749	1,771	1,973	2,047
	2015/11/15~2016/11/14	1,973	1,973	315	317	1,606	1,615	755	762
	2016/11/15~2017/11/14	755	762	30	31	563	570	223	230
C1	2014/11/15~2015/11/14	24,755	24,755	52,440	53,118	32,601	32,999	46,194	47,629
	2015/11/15~2016/11/14	46,194	46,194	18,232	18,292	28,204	28,298	37,655	37,751

	2016/11/15~2017/11/14	37,655	37,751	3,827	3,857	30,049	30,205	11,433	11,665
C-e	2014/11/15~2015/11/14	1,010	1,010	1,435	1,453	1,294	1,311	1,222	1,266
	2015/11/15~2016/11/14	1,222	1,222	456	458	966	972	755	760
	2016/11/15~2017/11/14	755	760	252	255	543	550	464	477
C-F	2014/11/15~2015/11/14	3,946	3,946	36,070	36,472	14,091	14,358	26,070	26,880
	2015/11/15~2016/11/14	26,070	26,070	35,162	35,325	51,828	52,172	9,933	10,044
	2016/11/15~2017/11/14	9,933	10,044	19,660	20,000	9,933	10,181	19,660	20,401
C-W	2014/11/15~2015/11/14	909	909	6,674	6,836	2,281	2,330	5,319	5,534
	2015/11/15~2016/11/14	5,319	5,319	4,561	4,597	6,315	6,368	3,778	3,822
	2016/11/15~2017/11/14	3,778	3,822	128	130	3,580	3,635	327	339
C-P1	2016/02/17~2016/11/14	0	0	419	419	10	10	409	410
	2016/11/15~2017/11/14	409	410	20	20	114	115	315	322
S	2016/08/04~2016/11/14	12	12	12	12	0	0	12	12
	2016/11/15~2017/11/14	12	12	0	0	12	12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6/11/15~ 2017/11/14	2015/11/15~ 2017/11/14	2014/11/15~ 2017/11/14	2012/11/15~ 2017/11/14	
투자신탁(전체)	3.34	2.57	3.27	-	4.47
비교지수	-	-	-	-	-
Class A1	2.17	1.41	2.11	-	3.34
비교지수	-	-	-	-	-
Class A-e	2.43	1.66	2.36	-	3.61
비교지수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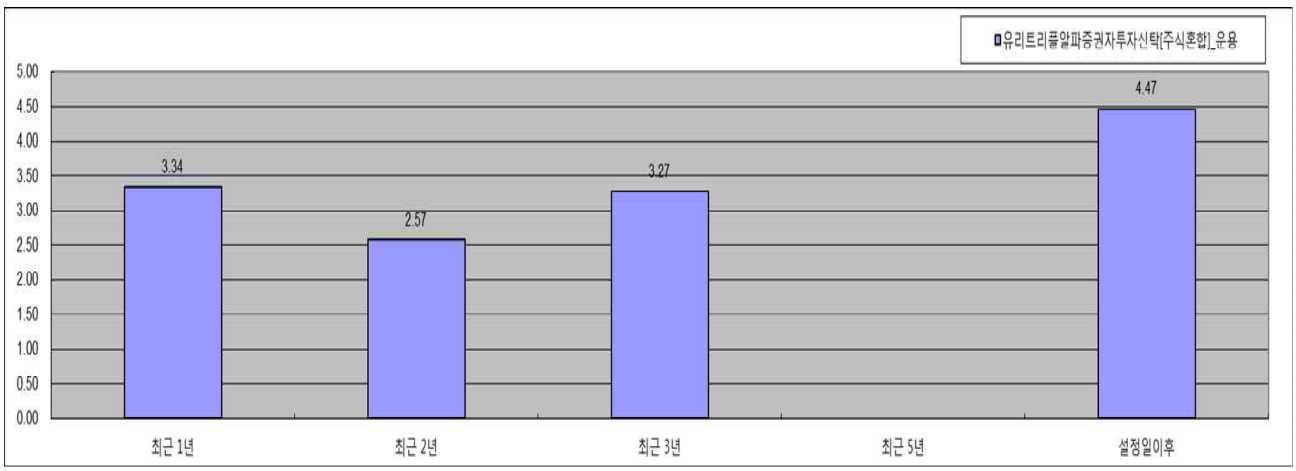
Class C1	1.77	1.01	1.70	-	2.88
비교지수	-	-	-	-	-
Class C-e	2.22	1.46	2.16	-	3.42
비교지수	-	-	-	-	-
Class C-F	2.63	1.86	2.48	-	3.24
비교지수	-	-	-	-	-
Class C-W	2.68	1.92	2.62	-	2.94
비교지수	-	-	-	-	-
Class C-P1	2.12	-	-	-	1.33
비교지수	-	-	-	-	-
Class S	2.49	-	-	-	1.83
비교지수	-	-	-	-	-
Class C-G	-	-		-	-
비교지수	-	-		-	-

주1) 비교지수 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6/11/15~ 2017/11/14	2015/11/15~ 2016/11/14	2014/11/15~ 2015/11/14	2013/11/15~ 2014/11/14	2012/11/15~ 2013/11/14
투자신탁(전체)	3.34	1.81	4.70	8.13	-
비교지수	-	-	-	-	-
Class A1	2.17	0.66	3.52	-	-
비교지수	-	-	-	-	-

Class A-e	2.43	0.91	3.78	-	-
비교지수	-	-	-	-	-
Class C1	1.77	0.25	3.11	6.49	-
비교지수	-	-	-	-	-
Class C-e	2.22	0.71	3.57	-	-
비교지수	-	-	-	-	-
Class C-F	2.63	1.11	3.72	-	-
비교지수	-	-	-	-	-
Class C-W	2.68	1.16	4.03	-	-
비교지수	-	-	-	-	-
Class C-P1	2.12	-	-	-	-
비교지수	-	-	-	-	-
Class S	2.49	-	-	-	-
비교지수	-	-	-	-	-
Class C-G	-	-	-	-	-
비교지수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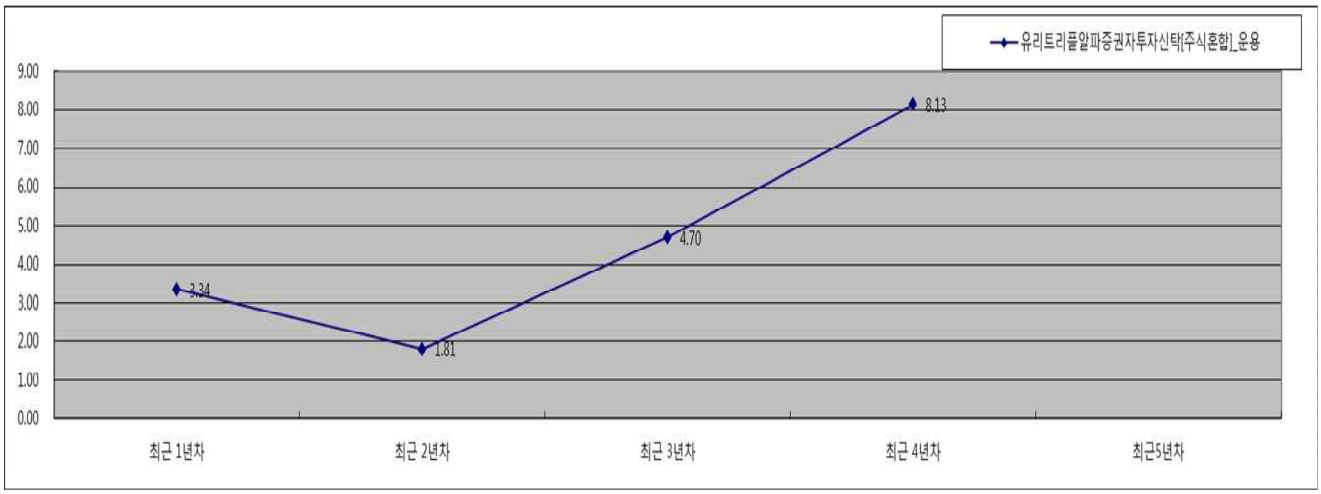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5)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7.11.14 기준, 단위: 백만원, %]

통화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기타	자산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출및예금		총액
대한민국	0	0	0	44,415	0	0	0	0	0	5	130	44,550
비중	0	0	0	100	0	0	0	0	0	0	0	100
자산합계	0	0	0	44,415	0	0	0	0	0	5	130	44,550
비중	0	0	0	100	0	0	0	0	0	0	0	100

주1) 자산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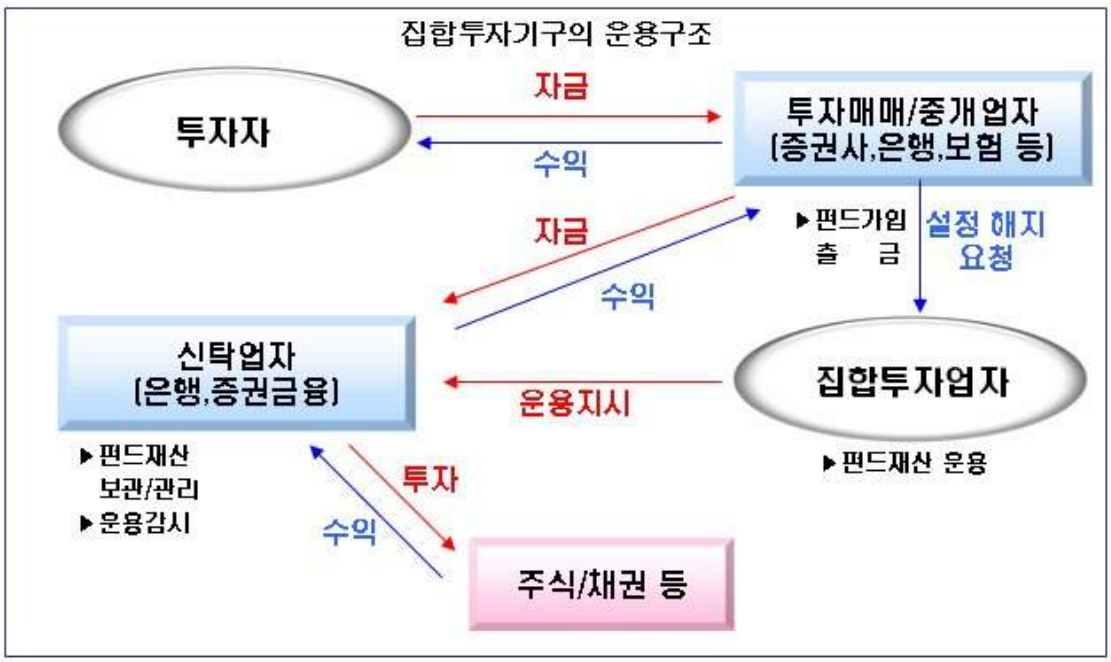
유리트리플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7.11.14 기준,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11,369	23,214	0	14,736	45	0	0	0	0	375	2,314	52,054
비중	22	45	0	28	0	0	0	0.00	0	1	4	100
자산합계	11,369	23,214	0	14,736	45	0	0	0	0	375	2,314	52,054
비중	22	45	0	28	0	0	0	0.00	0	1	4	100

주1) 자산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여의도동) ☎ 02-2168-7900
인터넷홈페이지	www.yurieasset.co.kr
회사연혁	1998.10 설립일 2001.10 국민연금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4.11 지방행정공제회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4.12 삼성생명, 정보통신부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5.01 우리은행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6.02 매경-제로인 선정 '2005 펀드 대상' 특별상 2006.09 국민연금 액티브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7.04 연기금풀 인덱스형, 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7.11 보험사 변액연금 인덱스형 운용사 선정 2008.07 국민연금 중소형주식형 운용사 선정 2009.01 유리TREX200 ETF 출시
자본금	153억
주요주주현황	부국증권㈜ 99.05% /우리사주조합 0.92% / 기타 0.03%
이해관계인	판매회사 중 부국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는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나. 주요 업무

○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구분	제 19 기 ('16.12.31)	제 18 기 ('15.12.31)	구분	제 19 기 ('16.1.1~'16.12.31)	제 18 기 ('15.1.1~'15.12.31)
자산총계	32,334	30,804	영업수익	11,555	9,488
- 현금및예치금	25,664	25,356	- 운용보수	5,737	4,274
- 유가증권	532	532	- 자산관리수수료	5,069	4,242
- 대출채권	187	88	- 이자수익	395	476
- 유형자산	123	191	- 당기손익인식증권처분이익	354	496
- 무형자산	3,596	2,645	- 당기손익인식증권평가이익	-	-
- 기타자산	2,233	1,993	영업비용	8,337	7,309
부채총계	1,185	2,103	- 당기손익인식증권처분손실	11	61
- 예수부채	-	-	- 수수료비용	271	185
- 차입부채	-	-	- 판매비와관리비	8,055	7,063
- 기타부채	1,185	2,103	영업이익(손실)	3,219	2,179
자본총계	31,149	28,701	영업외수익	12	41
- 자본금	15,300	15,300	영업외비용	21	30
- 자본잉여금	198	19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210	2,189
- 이익잉여금	15,651	13,204	법인세비용	762	537
부채와자본총계	32,334	30,804	당기순이익(손실)	2,448	1,652

라. 운용자산규모

(2017.12.15 기준, 단위:억)

구분	증권				파생형	특별 자산	혼합 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수탁고	4,206	2,007	21,667	-	5,577	6	595	-	34,05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 1577-8000
인터넷홈페이지	www.shinhan.com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① 신탁업자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 02-6714-4642
인터넷홈페이지	없음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8 (여의도동) ☎ 02)3770-0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여의도동) ☎ 02)739-35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인사동) ☎ 02)721-5300
홈페이지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입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 해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 포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가) 선정시 고려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거래 유형(예 : 상장주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단, 유동성이 없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는 위의 상기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유가증권의 매수 혹은 매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 회사 경영관련 비용 /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 마케팅비용 /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라) 중개사의 평가
- 각 운용부서장은 원칙적으로 아래 각 호의 요소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합니다.
  1. 매매체결능력
  2. 중개수수료
  3. 정보제공의 정도
  4. 조사분석자료의 질
  5. 결제이행능력
- 각 운용부서장은 상황에 따라 다른 합리적인 중개사선정기준이 있는 경우 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으며 배점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약정배분기준
-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10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합니다.
  2. 약정 집행은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5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5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 합니다.
  2. 약정집행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3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운용부서는 매 분기 마다 제4조에 의하여 중개사순위를 결정하고 "중개회사별 매매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분기의 약정배분은 제3항의 계획된 중개사순위에 따라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 고> 펀드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	법 제 233 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